

 국토교통부	<h1>보 도 자 료</h1>		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 된 열정 하나 된 대한민국 
	배포일시	2017. 1. 23.(화) 총 2매(본문2)	
담당 부서 도시광역교통과 택시산업팀	담당 자	• 팀장 박준상, 사무관 이성훈 • ☎ (044) 201-4756, 4770	
보 도 일 시		2018년 1월 24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. 23.(화) 14:00 이후 보도 가능	

택시업체 사납금 ‘깜수 인상’ ... 강력 대응 예정 23일 17개 시·도 간담회서 불법 사례에 대한 강력 처벌 요구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1월 23일 「전국 17개 시·도 지자체 간담회」를 열어, 택시 운송기준금(일명 사납금)을 인상하는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관련 법령에 따라 위법사항은 강력하게 처벌해줄 것을 요청하였다.
- 최근 일부지역의 택시업체가 운송비용 전가 금지제도의 시행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운송기준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사례가 있었다.
 - * 운송비용 전가 금지(택시발전법 제12조): 유류비, 세차비, 차량구입비, 사고처리비 등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택시 회사가 종사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 (시행시기: '16. 10. 1. 특·광역시 시행 → '17. 10. 1. 일반 시(市) 지역 시행)
- 이에,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관련 지침*을 배포한 바 있으며, 지난 11월부터 금년 1월까지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.
 - * 노·사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유류사용량에 비해 과도한 유류사용량을 전제로 운송기준금을 과다인상하는 행위는 운송비용 전가 금지 위반으로 처벌
 - ※ 처벌 (1차) 경과·과태료 500만원, (2차) 사업일부정자·과태료 1,000만원, (3차) 감차명령 또는 면허취소 + 과태료 1,000만원
-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 결과, 운송비용 전가 금지 제도를 악용하여 운송기준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행위에 대해 전국 시·도가 적극 지도·처벌해줄 것을 당부하였다.

○ 아울러, 최근 언론보도와 같이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운송기준금을 과도하게 올려 종사자의 근로여건이 악화되는 경우가 없도록 전국 지자체에서도 지역 노·사를 적극적으로 지도해줄 것을 요청하였다.

□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앞으로 택시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으며, 불법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지도·처벌할 계획이다”라고 밝혔다.

○ 한편, 어려운 택시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재단을 설립하였으며, 이에 맞춰 「조세특례제한법」이 개정(’17. 12.)되어 택시 부가세 감면분 일부(연간 약 90억 원 추정)를 종사자 장학사업 등 복지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.

- *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라 현재 택시회사는 부가세의 99%를 감면 중(~’18.12)
- 90%p : 택시 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직접 지급
 - 5%p : 자율감차사업의 인센티브로 활용
 - 4%p : 택시 종사자 복지재단에 활용할 계획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이성훈 사무관(☎ 044-201-4756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